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70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정희용·박준태·백종헌
김기웅·김선교·김상훈
최수진·박충권·이인선
박덕흠·조승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부족, 시설·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